



배포 일시	2022. 11. 22.( 화 )		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종오 (044-201-3817) 팀 장 이경수 (044-201-4770)
		담당자	사무관 장상준 (044-201-4756) 사무관 성경림 (044-201-3813)
보도일시	2022년 11월 22일( 화 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택시난 발생지역, 22일부터 택시부제 전면해제 - 11월 3주 배차성공률 증가세 유지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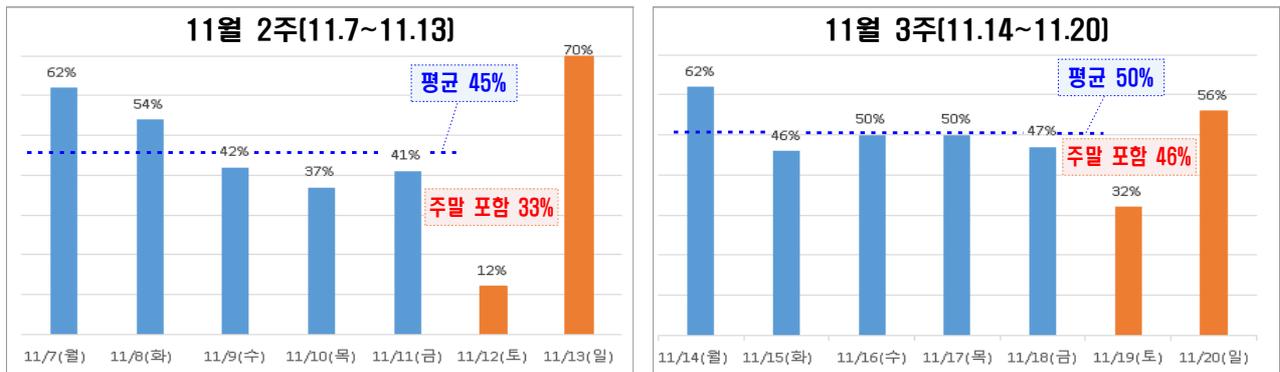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(10.4)」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, 11월 3주 정책효과(배차성공률\*)를 발표하고, 11월 22일(화)에는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·시행한다.

\* 배차성공률(배차성공건수/호출건수)은 수요과 공급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

□ 국토교통부는 “서울지역 11월 3주 평일 심야(11.14~11.18, 22시~03시) 배차성공률은 50%(주말 포함 46%)로, 11월 2주 45%(주말 포함 33%)에 비해 상승하였다”고 분석하였다.

【 11월 2주 및 11월 3주 날짜별 심야 배차성공률 비교 】

\* 출처: A社



\* ■ 평일 / ■ 주말(11.12는 서울지역 집중호우 영향으로 배차성공률 급감)

- 아울러, “11월 3주 배차성공률은 국가애도기간(택시수요 감소)이었던 11월 1주(평일 51%, 주말 포함 50%)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였다”고 밝히면서,
  - “11월 배차성공률은 코로나 이전('19) 수준까지 근접해가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”고 분석하였다.

## 【 코로나 前後 시기별 심야 배차성공률 비교 】

\* 출처: A社

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「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(10.4)」 후속조치로,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10월 31(월) ~ 11월 21(월)까지 행정 예고 하였으며, 11월 22일(화) 자로 공포·시행한다.

## 【 행정규칙 개정안 3건 주요내용 】

① (택시부제 해제) 택시부제는 '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되었으나,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.

○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이다.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\*(훈령)에 따라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등 원활한 택시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지만, 지자체는 지역별 관행을 유지 하면서 부제를 해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.

\*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

○ 국토교통부는 전문가·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'택시 승차난 발생지역'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11월 22일(화) 지자체에 통보하였다.

## 【 부제 해제 기준: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】

구분	방향성	구체적 기준
카테고리 I	· 택시부제를 이미 해제(한시적 해제 등)한 지역	-
카테고리 II	· (공급측면)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	1/4 이상 감소
	· (수요측면) 택시 운송수요(실차율)가 높은 지역	전국 평균(51.7%) 이상
	· (지역여건)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	지역민원, 지자체 의견 등

○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(한시적 해제 등)했거나, “기준 ①~③” 중 2개 이상 충족(택시공급이 저하되거나 택시수요가 많은 지역 등)하는 지역은 “택시 승차난 발생지역”에 해당하여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.

- 동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\*는 11월 22일(화)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, 이로써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(기준에 미운영 중인 81곳 포함)은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.

\*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제주 / 의정부, 안양, 부천, 광명, 과천, 군포, 의왕, 양주 / 춘천, 강릉, 동해, 속초, 삼척, 홍천, 철원, 양양 / 청주, 충주, 제천 / 전주, 군산 / 목포, 여수 / 구미, 경산 / 진주

- 앞으로 택시부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. 지자체에서 부제를 ①계속 운영(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47개 지자체)하거나 ②재도입하려는 경우,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,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.

\* 최초 심의 이후에는 2년마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제 운영 필요성 등 종합적 평가

**【 11.22 이후 택시부제 해제 지역 현황 】**

구분	기존		부제 해제 33곳 추가	변경(11.22~)	
	부제 미운영	부제 운영		부제 미운영	부제 운영
지자체 (계: 161개)	81 (50.3%)	80 (49.7%)		114 (70.8%)	47 (29.2%)

- 다만,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.

② (친환경 고급택시 등 확대) 그동안 고급·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(전기·수소차)의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친환경 고급택시 등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.

○ 국토교통부는 고급·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대폭 완화\*하여 11월 22일(화)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·시행하였다.

\* 「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」 개정내용 : (고급택시) 220kW → 160kW / (모범택시) 190kW → 110kW

③ (법인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 허용)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하여 음주측정을 차고지에서 실시한 후, 차량운행을 시작하는 등 택시기사의 출퇴근 비효율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.

○ 11월 22일(화)부터는 개정된 행정규칙\*이 적용된다. 앞으로,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(거주지 주변 등)에서도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\*\*한 후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.

\*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

\*\* 현재 전세버스는 차고지 밖 음주확인 가능, 법인택시도 차고지 밖 블루투스 음주 측정(본인인증)이 가능한 특례 부여(ICT규제샌드박스: 카카오 '21.1 및 i.M 택시 '22.7)

## 【 향후 추진계획 】

□ 최근 플랫폼 社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, 일부 택시 기사는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우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.

○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12월 1일(목)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1월 22일(화) 22시 전국개인택시연합(서울 강남)을 방문하여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, 12월에는 심야운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“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운행이 보장되고,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 “심야 탄력호출료,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강조하였다.

○ 또한, “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<sup>Type1</sup>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